■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 [별지 제4호서식] <개정 2015.11.4.>

자동차에 저당권을 설정하는 경우 '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(www.ecar.go.kr)'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저당권 말소등록 신청서

※ [ ]에는 해당하는 곳에 √표를 하고,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 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자	발급일자	처리기간 즉시 (항공기, 경량항공기의 경우 7일)

설정 대상	[V]자동차	[ ]건설기계	[ ]항공기	[ ]소형선박
	등록번호(등록기호) 123가4567			
저당권자	성명(명칭) 파주시청			
	주소 파주시 시청로 50			
채무자	성명(명칭) 홍길동			
	주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			
저당권 설정자	성명(명칭) 홍길동			
	주소 파주시 문산읍 개포래로 48			
채권액	금 일천만 (원)			
채권최고액	금 일천만 (원)			
담보가격	(원)			
대위 원인				

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」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합니다.

2020 년 1 월 1일

신청인 홍길동 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1. 말소등록의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 2. 저당권자의 인감증명서(자동차저당권의 경우 저당권자가 법인이고 제출된 사용인감계를 등록관청이 대조·확인할 수 있을 때는 제외합니다) 3. 제3자의 승낙서나 그에 대항할 수 있는 판결문 등본(저당권의 말소등록에 이해관계를 가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4. 저당권자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아 저당권설정자가 단독으로 저당권 말소등록을 신청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. 「민사소송법」에 따른 공시최고절차를 거쳐 받은 제권판결(除權判決) 등본 나. 「공탁법」에 따른 공탁서, 채권증서 및 채무이행에 관한 약정서 5. 대위 원인을 증명하는 서류(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등록신청하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	수수료 「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 시행령」 제10조에서 정한 금액

210㎜×297㎜[백상지(80g/㎡) 또는 중질지(80g/㎡)]

항공기 및 경량항공기에 관한 처리절차

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신 청 인	처리기관(담당부서) 국토교통부(항공기·경량항공기의 등록 및 저당을 담당하는 부서)